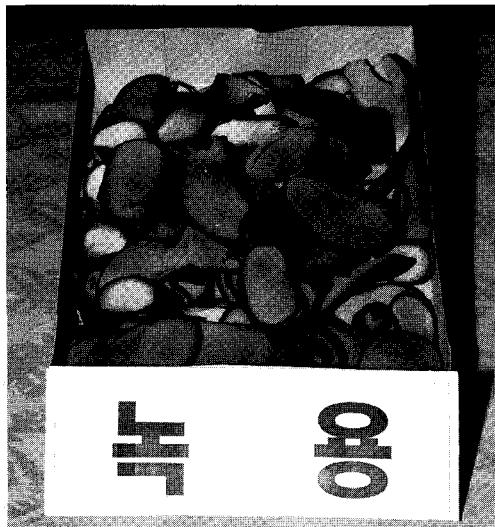


# 탁상행정에 사라진 「녹용」



녹용류의 품질기준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간에 조용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녹용의 회분율을 35%이하에서 25%이하로 개정했을때부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했던 관련업계는 복지부가 또다시 녹용중품의 명칭을 녹용각으로 바꾸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에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고시가 본격 시행되는 (기존 수입녹용에 대한 유예기간 만료후) 금년부터는 새로운 녹용류 품질기준에 따른 녹용은 구경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뉴질랜드를 비롯 우리나라에 녹용을 수출하는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지의 양록업자들이 회분율 25%이하의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 손

해를 감수하면서 절각시기를 앞당겨 사슴뿔이 2지로 돌아났을때 채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얼마전 자국 녹용류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의 녹용품질기준을 개정, 회분율 35%이상 제품에 대한 기준비면과 절편(자른 것)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은 국내 양록업계도 마찬가지다. 외국과 달리 녹용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양록농가가 기준 채취물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회분율 25%이하의 녹용을 생산해 낼수 있겠느냐는 의문엔 「가격이 보장되느냐」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

사용자인 한의사들 역시 녹용의 구경조차 어려워질 금년 상황에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소비자의 욕구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녹용과 녹용각 사이에서 변수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선 녹용각을 녹용으로 알고 복용해야 하는 손해를 경계해야 하는 부담까지 쳐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복지부나 식약청이 규격·표시 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만만치 않을 듯 하다.

한의협이 추진중인 녹용의 부위별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곧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녹용품질 기준을 탁상행정으로 공격받는 복지부가 이 임상실험 이후 녹용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궁금하다.\*

<주재승/한국의약신문 취재부장>